



# 폐화약 소각처리 중 폭발사고

## 1. 사고내용

○ 2007. 2. 21(수) 오전 10시 2분경 강원도 태백시 소재 (주)○○화약에서 폐화약(액상, 에멀젼, 응고상태)과 완제품(응고상태)으로 반품된 타업체 함수폭약 (○○화약 제품)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2명의 작업자가 사망하고 공실 외부에 있던 9명이 고막파열을 입은 사고임.

○ 사고발생시점에 휴식시간(10:00~10:15)에 흡연 등을 위해 여러 명이 공실 외부에서 휴식중에 폭발로 재해자(고막파열)가 많았음.

○ 현장 근로자에 따르면 “쾅” 소리와 함께 폐화약 처리장내 시설물 벽돌 등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아수라장이 됐다”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함.

## 2. 피해현황

○ 인적피해 : 인적피해 : 2명 사망(작업자), 9명 부상  
○ 물적피해 : 폭발압에 의해 폐기장 내 벽돌 등의 비래하여 5개 공실 지붕 및 유리창 일부 파손(반경 약 90m이내)

## 3. 사고물질 및 사고발생설비

### ○ 사고물질

사고물질은 화약폐기물로서, 폭약원료 및 첨가제가 일부 불량뇌관, 기타 폐기물(Box, 비닐 등)과 혼재되어 있었음.

- 주 화약 원료 물질명 : 질산암모늄(NH<sub>4</sub>NO<sub>3</sub>)
- 반제품, 불량 제품 : 함수폭약(알칼리 금속 또는

알칼리 토금속류의 질산염, 탄산염 등의 산화제, 예감제, 발열제, 물 등을 주성분으로 하며 폭약의 모양이 겔(슬러리) 또는 에멀젼 상태이고 조성 중에 물을 함유하고 있는 내수성 폭발을 말함.)

### ○ 사고발생설비

사고발생장소는 약 10m x 10m의 부지내에 위치한 화약류 폐기용 소각장으로서 폭발시 피해확산을 위해 폐기장내 통로 주위에는 높이 2미터정도의 흙둑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 일부벽은 벽돌로 쌓여 있음.

폐기장내에는 소각을 위한 화덕, 철망, 소화기 및 방화수통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기기설비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.

## 4. 사고발생 상황

화약폐기처리를 위한 소각작업은 철제화덕형태의 구조물위에 처리대상 물질을 놓은 후 화덕 밑에 종이나 나무 등 발화제를 놓고 점화하여 연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함. 주 소각 대상인 폐 함수폭약류는 스스로 발화하지 않으나 강한 열에 노출될 경우 표면연소의 형태로 연소됨.

### ○ 사고당시 상황

- 작업 근무자 2명이 소각작업에 투입되어 폐기물 소각을 시작

· 소각방법은 소각장 밖에 위치한 폐기용기의 내용물을 일단 비닐봉지에 담아 소각장소의 화덕위에 폐기물을 소량 점화한 후 폐기물의 연소상태를 보아가며 폐기물을 추가 투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함.

- 10:05 분경 소각장소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함.
    - 폭발 후 작업 근무자 2명은 사망
    - 인근 근무자 2명 화상
    - 기타작업자 7명은 창상 또는 고막파열로 부상하였음.
- ※ 상황 추정
- 사고발생시각이 휴식시간중(10:00~10:15)이어서 인근작업장의 근로자 일부가 작업장건물 밖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.

## 5. 사고원인(추정)

### 가. 소각 폐기물의 사전 분류 및 확인 미흡

주요 소각대상물질은 화약원료, 반제품을 포함한 폭발성물질과 기타폐기물이 혼재한 형태로, 대형폭발의 잠재 위험이 있음에도 소각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 미흡으로 불량뇌관 등이 포함된 상태에서 소각이 이루어짐.

### 나. 관계자외 작업자의 출입

폭발성물질을 취급하는 폐화약 소각작업은 당초 작업자 2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사고당시 관계자외 작업자가 소각장소내 출입 또는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피해규모가 큼.

### 다.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미준수

2006.6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쳐 개정한 공정안전자료중 “배출물의 처리설계 기준 및 사양”과 “폐약소각장 운영” 관련내용을 준수하지 않음.

- 화기작업허가서에 따르면 외부로부터의 폐기물 반입 등 특별한 내용이 추가될 경우 기존 작업허가외에 공장장의 작업허가 재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으나 이행되지 않음.
- 소각방법에 따르면 소각시 기폭의 우려가 있는 불량뇌관 등은 분리 제거하도록 되어있으나 분리되지 않음.

## 6. 사고교훈 및 동종 재해예방 대책

### 가. 폭발성물질에 대한 사전 분류 및 안전조치

폭발성 물질을 소각폐기할 경우 뇌관등 폭발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, 이러한 물질의 포함에 대한 개연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소각방법 대신 폭파 등 다른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폐기처리되어야 함.

### 나. 폭발위험장소에 대한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

화약류 폐기장소등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해당 작업을 위한 관계자 외에 현장출입을 금지하여야 함.

### 다.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준수

공정안전보고서 및 보고서에 따른 하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함.

## 7. 사고사진



<사진 1> 사고 후 폐기장 전경



<사진 2> 폐기물 내용물



&lt;사진 3&gt; 폭발되지 않은 미사용 뇌관 증거물



&lt;사진 4&gt; 폭발 잔해에서 발견된 뇌관

**<붙임 1>****TNT당량 모델 피해예측 계산서****□ 적용대상**

함수폭약 폭발사고에 따른 TNT 당량계산

**□ 적용 기술기준**

1. 사고피해영향 평가에 관한 지침(KOSHA CODE P-9-2005)

2. 사고피해예측기법(KOSHA CODE P-31-2001)

**□ 피해예측계산**

1. 함수폭약 소각량 : 22.05 lb(=10kg) 기준
2. 물질의 연소열량 :  $980\text{ kcal}/1\text{ kg}(\text{TNT}) = 1,764 \times 10^3 \text{ Btu/lb}$   
[제작자 제품중 중간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자료 기준]
3. 폭발수율계수 : 0.8(제작자 제품중 ANFO 함량 80% 적용기준)
4. 계산적용

**4-1) TNT 당량 산출 적용식**

$$W = \frac{\mu \times M \times Ec}{2000}$$

여기서, W : TNT당량(lb)

$\mu$  : 폭발수율계수

M : 함수폭약 소각량(lb)

Ec : 폭발을 일으킨 물질의 연소열(Btu/lb)

$$W = \frac{0.8 \times 22,05\text{lb} \times 1764\text{btu/lb}}{2000}$$

$$= 15.56 \text{ TNT당량(lb)}$$

**4-2) 환산거리(Scaled distance) 산출**

$$Z_G = R_G/W^{\frac{1}{3}}$$

여기서,  $Z_G$  : 환산거리(ft/lb $^{\frac{1}{3}}$ )

$R_G$  : 가장 먼 유리창의 깨어진 지점 : 279ft(85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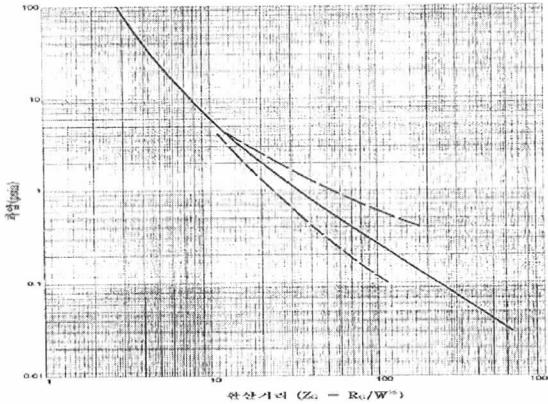
W : TNT당량 : 15.56(lb)

$$Z_G = 279\text{ft}/(15.56\text{lb})^{\frac{1}{3}}$$

$$= 111.7 \text{ ft/lb}^{\frac{1}{3}}(\text{환산거리})$$

**4-3) 과압 산출**

아래의 <TNT 과압 곡선>에서 가장 먼 유리창의 깨어진 지점 279ft(85m) 과압 산출 : 0.26psi(1.79kPa)



〈그림1〉 TNT 과압 곡선(fps단위)

[50% 확률 고막파열의 경우]

$$Pr = -12.6 + 1.524 \ln Ps \Rightarrow [\text{티엔오(TNO) 계산식}]$$

Pr : 프로빗, Ps : 과압(50%에 해당하는 프로빗은 5.0 이므로)

$$5 = -12.6 + 1.524 \ln Ps$$

$$17.6 = 1.524 \ln Ps$$

$$Ps = \text{Exp}(17.6 / 1.524) = 43,199(\text{N/m}^2) = 6.3(\text{psia})$$

〈TNT 과압곡선〉에서 6.3 psi에 해당하는 환산거리 ( $Z_G$ )는 = 10 이므로

$Z_G = R_G/W^{\frac{1}{3}}$ 를 적용하여 실제거리( $R_G$ )는 = 25(ft) = 7.6(m)로 예측할 수 있다.

[90% 확률 고막파열의 경우]

$$Pr = -12.6 + 1.524 \ln Ps \Rightarrow [\text{티엔오(TNO) 계산식}]$$

Ps : 90%에 해당하는 프로빗은 6.28이므로

$$6.28 = -12.6 + 1.524 \ln Ps$$

$$18.88 = 1.524 \ln Ps$$

$$Ps = \text{Exp}(18.88 / 1.524) = 240,013(\text{N/m}^2) = 34.8(\text{psia})$$

이 경우 환산거리( $Z_G$ )는 = 4.3 이므로

$Z_G = R_G/W^{\frac{1}{3}}$ 를 적용하여

실제거리( $R_G$ )는 = 11(ft) = 3.3(m) 할 수 있다.

## □ 피해 검토결과

o 상기 결과에서처럼 85m 거리에서 유리창이 파손된 현장조건을 고려하여, 유리창이 깨어질 수 있는 폭발압 0.26psia(1.79kpa)를 기준으로 할 때 계산된 사고시의 소각된 함수폭약의 양은 22.05 lb(10kg) 전후로 판단되며, 이때의 폭발압을 기준으로 현장에서처럼 90% 이상의 작업자가 고막이 파손되기 위하여는 34.8psia(240kPa) 이상의 폭발압이 필요하다.

이 폭발압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3.3m 이내에서 발생된다.

또한, 50% 이상의 작업자가 고막이 파손될 경우에는 6.3psia(43kPa)의 폭발압이 요구되며, 이 때의 거리는 7.6m로 계산되어졌다.

o 그러므로 현장처럼 2m 높이의 폭압방지 둑이 없었을 경우에는 34.8psia의 폭발압에 의해 작업자 11명 전원이 사망하였을 것이나 폭압방지 둑 뒤편에 있던 작업자는 고막이 손상되는 재해를 입었고, 폭압방지 둑 안에 있었던 사고지점 주변의 작업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.

o 상기 검토는 공간이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의 계산결과(3.3m)이므로 실제상황에서는 폭압방지 둑의 영향을 고려하면 3.3m보다 다소 짧은 거리의 폭압방지 둑 바로 뒤편에서 작업자들이 모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. ↗



[한국산업안전공단]